

영등포구의회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2.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선이 발생하고 동 통합 추진으로 폐지 동 청사를 독립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등 동 주민센터와 명칭 혼선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6.12. 법제처)에 따라
 - “각 호의 1”을 →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
 - “내지”를 → “~부터 ~까지”로 정비
 - “당해”를 → “해당”으로 정비
 - “인”을 → “명”으로 정비
 - “기타”를 → “그밖에”로 정비

-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
-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의 보고시기 조정(안 제14조)
-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했을 때 자원봉사자로 관리
(안 제18조제4항)
- 위원 해촉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안 제20조제1항)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서울시 행정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그밖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중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제1항 중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보고하는 것을 4개월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은 사업계획수립과 사업발굴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고

- 안 제18조제4항 중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 봉사자로 관리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 안 제20조제1항 중 위원 해촉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마련한 주민 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2. 4.

보 고 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 2007. 8】

○ 동 「사무소」 명칭

-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

○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게 변경
- 시·자치구별로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 추진

□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 【서울시 행정과-16563, 2008. 9. 1】

○ 변경명칭 : 「자치회관」

- 종전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자치회관』으로 변경
- 자치회관 :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하는 “자치”기능을 강조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개념을 포함한 개념임.